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연월일 | 2020. . .<br>(제 회) |      |

중 합 부 동 산 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홍 남 기<br>(기획재정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를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개인(세대원이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또는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주택에 한정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

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 7.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_\_\_\_\_

\_\_\_\_\_

1. ~ 7. (현행과 같음)

8. \_\_\_\_\_

\_\_\_\_\_

\_\_\_\_\_

---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개  
인(세대원이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

-----

-----

-----

-----

-----

-----

-----

---

-----

-----

-----

-----

----- 제외하고, 법인 또

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성  
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

가 있는 날 이전에 「민간임

가. ~ 다. (생략)

② ~ ⑩ (생략)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신청은 종전의 신청을 따른다)한 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신청은 종전의 신청을 따른다)한 주택에 한정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
| 연 락 처       | (044) 215 - 4313 |